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2,757,091	23,482,713
일반회계	721,246,337	21,637,390
특별회계	61,510,754	1,845,323
공기업특별회계	47,709,774	1,431,293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5,986,745	479,602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723,029	951,691
기타특별회계	13,800,980	414,029
의료보호특별회계	2,793,469	83,80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59,028	22,77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408,045	192,241
주택사업특별회계	536,599	16,098
수질개선특별회계	261,106	7,833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042,733	91,28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 해당없음 "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90,12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